| 의안번호  | 제 147 호  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 결   | 2007년 월 일 |
| 연 월 일 | (제263회)   |

#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

| 제 출 자 | 충청북도지사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제출연월일 | 2007년 9월 3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###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147

제출연월일 : 2007년 9월 3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## 1. 제정이유

-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 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고자
-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(BIG충북마크)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BIG충북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 (안 제3조)
- 사용신청 및 사용권부여 방법(안 제4조 및 5조)
  -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함.
  - 도지사가 종합 검토하여 품질인증 및 사용권을 부여토록 함
- 사용자의 책임(안 제6조)
  - BIG충북마크를 사용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함.
- 사후관리 규정(안 제7조)
  - 도지사 및 시장·군수가 사후관리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·보완·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.
- 사용권 정지 및 취소(안 제8조 및 9조)
  -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사용권의 정지 • 취소 등의 처분근기를 마련함.

- 위원회설치 및 기능(안 제10조 및 11조)
  -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- 위원회는 품목선정과 BIG충북마크 사용권의 지정 •취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도지사가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함
- 상표사용자 지원 및 홍보(안 제13조)
  - 인증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BIG충북마크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BIG충북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

3. **의안전문** : 붙임

4. 관계법령 : 붙임

5. 참고자료 : 붙임

####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줌으로써,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충청북도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(이하 "농특산물이라 한다".)"이라 함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으로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라 한다")가 품질이 우수 하다고 인증한 상품을 총칭한다.
  - 2. "농림수산물"이라 함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.
  - 3. "농산물가공품"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• 가공한 가공식품 • 전통식품을 말한다.
  - 4. "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(이하 "BIG충북마크"라 한다.)"라 함은 충청북도 브랜드 슬로건을 말하며 그 표시는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의한다.
- 제3조(대상품목) BIG충북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「상표법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[별표1]의 상품류 구분에 의거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4조(사용신청) ①BIG충북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서 단일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생산·출하하는 공동연합마케팅조직은 대표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, 신청기간,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5조(품질추천 및 사용권 부여)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

받은 때에는 현지확인 등 종합검토결과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품질인증 및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,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6조(사용자의 책임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BIG충북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농특산물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  - ②BIG충북마크 사용자는 BIG충북마크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,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규정과 사용 중지 및 정지,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한다.
- 제7조(사후관리) ①도지사 및 시장・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공무원을 지정 • 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품질관리공무원은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③도지사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 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「상표법」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용권 정지) 도지사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정지할 수 있다.
  - 1. 품질인증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
  - 3. BIG충북마크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
  - 4. 그밖에 도지사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9조(사용권 취소) ①도지사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

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BIG충북마크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
- 2. 품질인증 받은 품목의 품위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인증 받지 아니한 품목에 BIG충북마크를 사용하는 경우
- 3.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「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」「산업표준화법」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등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
- 4. 제8조의 BIG충북마크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 BIG충북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는 폐기 말소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위원회 설치) ① BIG충북마크 사용의 지정·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
  -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  - ④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·소비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-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-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.
  - ⑦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사 또는 검토하고,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.
  - 1. 품질인증 농특산물 품목선정에 관한사항
  - 2. BIG충북마크 사용권의 지정 · 취소에 관한사항

- 3. BIG충북마크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사항
- 4. BIG충북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
- 5. 기타 도지사가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- 제12조(실비보상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상표사용자 지원 및 홍보) ①도지사는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BIG충북마크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
  - ②도지사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을 국내외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.
  - ③도지사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BIG충북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사무위임)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-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련 법 령

####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23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##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안

A Type







В Туре





